

제437회 국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7월15일(수)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6. 현안질의(추가)

상정된 안건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2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2
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 2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 2
-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30
6. 현안질의 30

(14시08분 개의)

○위원장 서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에서는 종합특검법 개정안, 보호관찰법 개정안, 공익법인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66)
2.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3.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20)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5)

(14시09분)

○위원장 서영교 의사일정 제1항부터 5항까지 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승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김승원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득구·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등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을 통해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수사대상에 추가하고 파견공무원을 현행 13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하며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렸습니다.

또한 특별검사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였고 종합특검의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3대 특검 수사기록 등의 등본을 제공받거나 열람·복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 등의 사무 담당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당 기관의 장이 보호관찰 등의 사무 집행을 위한 구인, 유치 등의 권한을 가지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고 국정과제의 적기 이행을 위해 시행일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에게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7월 1일 상임위를 시작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최대한 소위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다. 김승원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게 최대한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러나 누명 쓰는 사람 없게 공정한 사법정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답게, 수사기관인 경찰과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검사들이 하던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법원에서 공판 유지가 제대로 되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심사들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오셔서 오늘은 3개의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타 상임위 법안을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44건…… 기후에너지 관련 등 아주 긴급한 법안들이 많습니다. 44건을 모두 다 법사위 관계자 여러분이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여야가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원내대표단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하면서 잠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법안의 의결을 잠시 연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아주 힘겨운 상황입니다.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곳에 그 마중물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니 국민의힘은 일하지 않고 계속 때만 쓰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행돼 나가는 데 한 치의 착오 없이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가며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님, 바쁘신 와중에 계속 일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한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예.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안에 관련해 갖고 보호관찰법 통과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께서 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시고 또 신속하게 통과시켜 주셔서 가지고 소년범죄 예방, 소년비행 예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부를 대표해 갖고 다시 한번 서영교 법사위원장님과 또 여러 법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감사합니다.

노경필 처장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도 제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명 대통령후보 사건을 단 이틀 만에 파기환송 시키면서 법적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선이 치러졌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도 제대로 임명되지 못하고 법원행정처장님 얼마 만에 오시는 건지, 저희들이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요. 오늘 오신 것을 어떻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임명도 축하드리면서요 법사위에 처음으로 출석하셨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법원의 역할을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회의원님들의 목소리를 법원에 잘 전달하고 그리고 제대로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오늘 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안녕하십니까? 어제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취임한 노경필입니다.

먼저 저에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된 하반기 법사위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이 굳건히 지켜지면서도 국민들의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멋진 결과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들께서 염려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법행정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지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국민의 뜻을 잘 새겨서 법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 역할 해 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안 5건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 내용 과정 속에서 현안도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고요. 현안을 하고 싶으시다면 빨리 통과시키고 또 현안 토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십시오.

김동아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원 위원님, 손솔 위원님.

토론하실 것을 준비해 오셔서 항상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은 안 하십니까?

○**박은정 위원** 예,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 그러니까 지금 손 먼저 들지 않고?

○**박은정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어쨌든 마음에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아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장관님, 이번에 종합특검 연장안이 지금 상임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연장도 연장인데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하는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 공소유지 변호사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발의의 정확한 취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장관이 그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파견 나온 검사들

이 제대로 업무 수행을 안 하고 있고, 기존에 파견 나온 검사들마저 복귀하려는 의사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 관련해서는 현재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검사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검에도 가능한 한 유능한 검사들이 갈 수 있게 협조하라는 그런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실은 약간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법무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오히려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들이 사실은 더 우대받고 향후에 업무평정이나 이런 데서 좋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대검이나 검찰 집행부에서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검에 파견 나간 경력을 수도권 근무 경력으로 치고 그 경력을 뺀 다음에 향후에는 지방으로 발령을 나갈 수 있다 또한 유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돈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 파악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것과 관련해서는 기존과 다르게 특검 파견검사들에 대해서 불이익 준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와서 인사 할 때는 특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가능하면 특검에서 그동안 충분히 고생하고 열심히 했었던 검사들이 배려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다만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일선의 검사들은 향후 본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검찰 내부 인사도 저희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 계획된 바가 없고 하니까 일선 검사들이 그런 면에 좀 불안감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아 위원** 일선 검사들 개개인은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잡아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법무부와 장관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그 면에서는 정말 누구 못지않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특히나 지금 특검이 추가로 수사를 더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김건희 도 이치모터스 사건을 무마한 그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직에 있는 검사들의 상당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견 나간 검사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법무부장관으로서 제대로 좀 교육을 하시고 또 처우에서 조금 더 우대받을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또 법무부·검찰청 내에서 그런 불이익 조치나 혹시나 또 알게 모르는 선후배 관계에서 압박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매일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검찰이 과거에 그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해 갖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던 그 부분에 관련해서 반성을 해야 된다 더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드러내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파견된 검사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또는 처우에 있어서 본인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이 15명인데 12명밖에 파견을 안 나가 있다고 합니다. 3명 더 충원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다만 그 검사들을 억지로 보낸다, 발령을 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의지를……

○**김동아 위원** 검사 2000명 중에 지금 15명도 못 추리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계속 신청을 받고 적절하게 이런 정도 수사를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검사들, 그런 경험 있는 검사들을 대상으로 권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동아 위원** 제대로 파견 정원 다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도 그 면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지금 특히나 전 검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니만큼 특검 내부나 외부에서 잡음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 노경필 처장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취임하시면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사과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걸 느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문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에 관련됐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법사위원장께서 간단히 지적은 했지만…… 물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하신 것도 있어요.

12월 3일 계엄이 발동됐지만 국회에 의거해서 제지됐잖아요. 국민에 의거해서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2월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책회의 여신 것 아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참석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 대책회의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계엄사에서 법원에 파견을 요청하더라도 보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12월 4일은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계엄이 성공하면 사법부의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걸 벌써 상당히 깊숙하게 성공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박지원 위원** 그 자리에 안 계셨더라도 법원행정처장이면 그건 파악하고 오셨을 것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사후에 최근에……

○박지원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사과할 의사 있으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보고받기로는 당시에 회의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그 당시의 계엄……

○박지원 위원 파견은 협조하지 않지만 계엄 되면 사법부가 재판이 중단되잖아요. 군사 재판으로 넘어가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자’ 이 얘기는 쿠데타의 성공을 마음속에 두고 준비한 거 아니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위원 다음에 또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 가지고 다음 국회에 나오실 때 여기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안 하시니까 그 부의…… 또 전부 미제로 남던데 왜 지금 대법관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추천한 것을? 대통령하고 알력이 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언제까지 해요? 만약에 국회에서 대법관의 청문회를 안 해 주면 국회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지연된다고 난리법석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국민한테 설명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것도 지난번에 법원행정처장직무대행한테 물었는데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해 가지고 안 했어요.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다음 나오실 때 말씀하세요, 언제까지 하겠는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지금 대법원 판사가 몇 분, 대법관이 몇 분 공석 중이에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현재는 한 분입니다.

○박지원 위원 한 분이고 곧 내일모레 또 한 분 나오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야 된다고요. 잘하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이게 신고예요. 이 정도가 아니라고요. 봐주는 거예요, 지금.

법무부장관님, 쿠광 사건은 우리나라 법률적 문제입니까, 법적 문제입니까, 미국과의 외교적 문제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국내법 위반의 문제로 출발된 겁니다.

○박지원 위원 국내법 위반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민국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노동자들을 빼 오는데 힘들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깍소리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와중에 쿠팡 주식을 좀 팔고 샀고 보유했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주미한국대사……

○위원장 서영교 1분만 더 드리세요.

○박지원 위원 불러들이니까 이게 외교적 문제로 굉장히 크다 이렇게 국민들은 받아들이는데, 외교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외교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 다만 사건 초기부터 저희 국제법무국 같은 경우는 자칫 이게 ISDS 같은 그런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해 왔고요. 우리 국내법의 정당한 집행 외에 다른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한 바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아니, 우리나라 삼성·LG·SK가 미국 가서 투자해서 기업 하지만 미국법에 저촉되면 처벌받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쿠팡이 아무리 미국에 상장하고 거기에 그 본거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사업하면서 그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정보 유출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필요한 조치를 개인정보위에서 내렸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했잖아요. 한국 오면 한국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외교적으로 적당히 하지 말고 주권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 명확한 일을 해 주셔야 되고, 검찰이 지금 1년 반 수사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 검찰은 전혀 수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경찰이 못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든 주권국가로서, 법치국가로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무부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손솔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손솔 위원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위원님들 자리에 문서를 하나 뒀는데요, 확인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도 받으셨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받지 못했습니다.

○**손솔 위원** 제가 더 배포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이 큼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의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법안들을 비교·분석을 해 봤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해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달아서 위원님들과 장관님, 처장님, 관련 부처, 기관에도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서영교 위원장, 김승원 간사와 사회교대)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관련해서 찬반을 물었지만 28%가 충분히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여러 쟁점들, 의문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고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사위에서 이번 주 월요일 1소위부터 법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길게 가져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려를 담아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제가 월요일에 여성단체들의 우려를 들었던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마치 한쪽 편에 든 것처럼 왜곡이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우려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들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을 담아서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우려를 담아내는 데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모습들을 저희 법사위에서 보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의원님들께서 먼저 발의를 해 주셔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 법안들을 봤을 때 수사·기소 분리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권리를 명문화한 새로운 편을 이번에 신설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뒀습니다.

피해자분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경찰 수사를 했을 때, 특히 불송치 됐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수사를 하고 나서 재수사를 해야 될 때 같은 곳에서 하면 이것을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꼭 담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법안에서

는 부족한 부분들을 의견에는 달아 뒀고 법안을 또 추가로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 의견서를 제출해 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 긴급보완수사요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찰이 법률 판단을 잘못하고 놓쳤을 때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검경의 수사협력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크로스체크 할 수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피해자는 어떻게 호소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해 나가면 좋을지 의견을 달아 뒀으니까 봐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 않지만 촘촘히 논의하면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분만……

○위원장대리 김승원 1분만 시간 더 드리세요.

○손술 위원 어쨌든 제가 1소위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이 아니어서 이렇게 또 의견서로 제출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법사위에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바라고요. 장관님의 의견도 주셔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어느 정도로 결정이 나서 우리가 갈 텐데 생각보다 시행령에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답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법무부의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하튼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이 자료를 저희 법무부도 면밀히 검토하고 또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희도 같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진보당에서 손술 위원님 중심으로 낸 안이라고 생각하고 무겁게 잘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가 먼저 드셨나요?

○박은정 위원 먼저 하시고……

○김용민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승원 그러면 김용민 위원님 토론하시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손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여기 법사위원들 다 같은 고민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서 검사의 권한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권리구제를, 피해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라는 것에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그것 같이 잘 고민해 주시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를 국회에서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운용되는 것은 정부가 책임을 지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완벽한 제도 설계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 설계를 함께 고민해서 만들면 그 제도가 잘 운용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철저하게 시행해 주십시오. 특히 조직 기강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그리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바로 직전 회의 때, 지난번 법사위 회의 때 권한대행이 나오셔서, 기우중 차장이 나오셔서 제가 좀 큰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고 지명하지 않고 있느냐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제가 거론을 했더니 곧바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김용민 위원** 돌아가셔서 그런 얘기 좀 하시고요.

그리고 법원행정처장님, 작년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을 내셨는데 그 판결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지금 탄핵안까지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 판결의 국민적인 의심,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판결에 대해서 본의와 다르게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또 국민들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당시에 정해진 법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결론을 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 말을 지금 아무도 믿지 않고 있고 굉장히 공허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은 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많이 안타깝고……

○**김용민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반성하시고 뼈를 깎는 쇠신의 기회를 삼으셔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용민 위원** 당시에 대통령후보를 법원이 나서서 바꿔치기하려고 했어요. 도저히 받아들이 수 없는 사법내란, 사법쿠데타였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는 아직 용서가 되지 않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이 새로 오셨으나 그 원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법무부장관님,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보고받은 게 없다고 하셨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용민 위원** 그런데 지금 그사이에 구속영장 청구돼 버렸습니다. 장관님이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혹시 더 보고받으신 것 없으세요? 내란에 당시 검찰총장과 기조실장이 관여했다라는 증거들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직 검찰총장이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된 상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일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이 지난번에 모르고 계셨다고 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지금 언론에 나온 것 그 이상의 보고를 받은 바는 사실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해 갖고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또 법무부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지금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도 그것 관련해 갖고서 어쨌든 법무부나 검찰이 내란에 관여된 그

런 흔적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저는 적극 협력을 해야 된다,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드러내지 않고 내부에서 그것을 또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또 점검을 엄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 사실 이런 일이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면 정말 조직이 뒤집어져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소극적으로 보고받으시고 조치를 취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당시에 대검이 내란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관여했고 누구까지 관여했으며 어느 정도의……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승원** 1분 더 드리세요.

○**김용민 위원** 어느 정도의 범죄에 가담했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방식이 됐든 어떤 방식이 됐든 아니면 외부에 맡기든 뭐가 됐든 이것은 장관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특검에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취임 초기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김용민 위원** 있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철저히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반성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저희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출범했고 검찰에서 그래도 사명감을 갖는 검사들로 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검사들로만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심우정에 대해서도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검찰이 내란에 가담했던 것들을 아직도 법무부장관님은 모르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회가 어쨌든 굉장히 의지가 있는 분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진상조사단이 거기서 소극적으로 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축소한다고 하는 그런 일은 없게 저희들이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승원 간사, 서영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지금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차관께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건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송치 부활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저희 법무부도……

○**박은정 위원** 법무부도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희가 정부의 일원인데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은정 위원** 법무부차관이 다른 말씀 하고 있고 법무부 검토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깐 장관님께서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차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 그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부작용들,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박은정 위원**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여기 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깐 장관님께서 챙겨 봐 주시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박은정 위원** 전건송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게 법무부 공식 입장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식적으로 제가 결정한 바는 없지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 공식 입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전건송치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나 하면 그 당시에 이미 전건송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전건송치되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검사들이 살펴봐도 그중에서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한 1% 정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피의자 신분에서 빨리 해방을 시켜 주고 조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전건송치 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건기록과 증거는 불송치하더라도 모두 검사에게 가고 90일 동안 사건기록을 검토해서 그중에서 재수사요청을 한 2%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결정이 바뀌는 것은 0.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한 1% 정도 되는 거지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들 속에서 전건송치들이 폐지가 됐는데 법무부가 이제 와서 전건송치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화면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조직적 사건 은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사건을 은폐한 대표적인 사례가 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아시지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해서 경찰 수사에 탄지를 걸고 그리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아무렇게나 보완수사를 해서 저 사건을 은폐시켰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겠다는 근거가 만 가지도 넘는데 검찰에 수사권을 줘야 되지 않는 근거 저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세요.

장관님, 저 사건 어떤 사건인지 알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저기에 나오는 전직 법조인 집안 에이스 검사의 후배 검사 성폭력사건, 저 사건은 2015년에 은폐되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감찰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 가지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저 사건에서 지금 잘 나가는 매형인 검사, 누군지 아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박은정 위원 누구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

○박은정 위원 장관님, 모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갑자기 이름을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 사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말씀하시지요. 말씀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가르쳐 줘요.

○박은정 위원 한동훈 검사입니다. 저 사건은 지금 장윤기 사건하고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이 경찰의 조직적 은폐, 경찰의 유착을 통해서 사건이 은폐되었다면 저 사건은 검사가 가해자고 검사가 연루된 사건으로 저 사건은 은폐되었습니다, 검찰에서.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십시오.

○박은정 위원 사건 자체가 수사조차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찰의 보완수사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런 사건은 그러면 어떻게 사건 은폐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에서 사건을 은폐했는데요, 어떻게 은폐를 막을 수 있습니까? 저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위원님 지적한 그 사건들은 저도 그 당시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요. 저 사건의 해당 피의자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당시에는 은폐되었고요. 2018년 서지영 검사의 미투로 비로소 재수사가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사건의 은폐가 검찰하고 경찰, 지금 장윤기 사건하고 은폐 구조가 비슷한데 지금 경찰은 경찰도 구속이 되고 검정이 수사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저 사건은 처벌도 되지 않고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1분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박은정 위원 검찰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기 위해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로 보내서 공수처에서 보완수사를 통해서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어떤 뭐……

○박은정 위원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의 보완수사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신다면 검사가 저렇게 은폐하는 사건들, 검찰의 은폐는 공수처로 모든 사건을 송치해서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검사의 사건 은폐를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금 검찰을 개혁하려는 이유가 검찰 수사가 문제가 돼서 개혁하려고 하는데 다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소청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저 사건 있을 때의 검찰과 지금 검찰은 이미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입법해 주신 공소청·중수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검찰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완수사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 폐지는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1, 2%라고 말씀하지만 검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도대체 몇 건이겠습니까? 정치적 사건이 몇 건이겠습니까, 다 합쳐 봤자?

정말 문제 되는 사건은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주로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들, 아동 학대,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기범죄들 같은 경제범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1, 2%라고 말씀하시지만 수십만 건 사건 중에 그런 것이 1%면 몇천 건이 넘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도 검찰에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법무부장관으로서 그런 유형의 사건들을 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도 물론 면밀히 보고 있어 가지고서, 밖에 알려지는 것들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1%의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은정 위원** 그래서 1%를 재수사요청을 해서 검사들이 바꾸는 게 0.73%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게 0.73%라 하더라도 그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0.73%로 지금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어요, 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구조가 돌아가는 것 면밀히 한번 보십시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요구로 가능하고요. 지금 성폭력 사건 얘기하시는데 저 사건이 성폭력사건이에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재수사요구든 보완수사요구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억울하지 않게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1%를 갖다가…… 위원님, 그 1%를 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릴까요, 박은정 위원님?

○**박은정 위원** 예.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 1% 때문에 검찰이 존재하는 겁니다.

○**박은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요청을 해서 결정을 뒤집는 게 0.73% 정도 됩니다. 재수사요청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장관님께서 지금 성폭력사건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제가 예를 든 저 사건이 성폭력사건입니다. 저 사건의 피해자가 눈물로 호소하고 있잖아요,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가.

○**법무부장관 정성호**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박은정 위원** ‘국민 여러분 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이 보완수사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가 관련됐기 때문에 문제지만 그런 사건들 많습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 관련이 문제가 아니지. 검사가 관련된 사건도 저렇게 하는데 일반 피해자는 어떻겠어요, 검사들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다.

○**박은정 위원** 지금 구조가 똑같은 구조, 수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 한 똑같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검찰 수사 안 합니다.

○**박은정 위원** 검사들이 저 사건을 저렇게 은폐한 이유는, 검사들이 사건을 은폐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중수청·공소청 되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수사개시를 못 하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박은정 위원**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은폐될 수 있었던 구조이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기 때문에 이미 중수청·공소청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공수처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은정 위원** 그래서 검사에게 사건을 주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장관님.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말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서영교** 우선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실 시간이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

○**법무부장관 정성호** 이미 국회에서……

○**박은정 위원** 아니, 이미 다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계속 얘기하시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우선 박은정 위원님 하셨고요. 또 필요하면 다시 신청하시고요. 법무부장관님,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아니,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이 이미 박탈됐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는 중수청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반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완수사 문제는 일차적인 수사기관들이 해 온 사건에 관해서 보완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를 박탈한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충실하게 보호될 수 있게 그 제도적 장치를 저희는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수사 현실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은정 위원 그러면 저도 1분 하겠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아니, 잠깐만요. 이제 조금 지나고 하세요.

○박은정 위원 아니요. 제가 여기에 반박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지나고 하세요. 아니, 잠깐 지나고 하시고요.

○박은정 위원 반박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틀린 내용인데 제가 반박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박은정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김남희 위원님, 잠깐 기다리시고요.

○박은정 위원 제가 반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우선 사회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전체로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완수사권까지 수사권은 폐지했고 그렇게 공소청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래서 보완수사권도 정리하는 입장, 폐지하는 입장을 정부는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약자와 여성 성폭력 피해자 어디 가서 말도 못 합니다. 내가 성폭력 당했다고 말하기 어렵지요. 장애인 그리고 아동학대사건 등과 관련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게 형사소송법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담아서 피해자가 또 2차 피해, 3차 피해 받지 않고 그러나 가해자는, 누명을 쓰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만 범죄자는 확실히 처벌하게 그렇게 수사 진행이 돼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사위에서 공개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여성 피해자들을 대신하고 대변하는 여러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몇 차례에 걸쳐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 속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을 또 만나서 저희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다 듣지는 못했고요. 저와 김승원 위원님이 같이 좀 집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경찰들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시민 단체의 이야기도 들었고요. 몇 가지는 김승원 위원님과 제가 좀 중심으로 들었고요. 다른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내일은 김용민 위원 등 몇 분이 또 토론회를 공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듣고, 그러나 꼭 원칙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하면서 했던 무수히 많은 일들, 그 정점이 바로 윤석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25년형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김태호 등, 지금 심우정 등이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압수수색 그리고 구속영장이 첨부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김학의 사건은 누가 덮었나,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다 올렸는데 김학의 사건은 누가 덮었나, 검사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통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들으면서 몇 차례 가해 과정을 통

해서 덮은 것 그러나 그것도 또 역사는 다 밝혀내어서 처벌하는 과정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권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합니다. 기소하는 와중에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으로 모든 경찰이 하는 기록을 통째로 보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소통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찰은 이 과정에서 둘의 수사와 기소, 두 기관을 견제하게 해서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철저하게 하는데 그동안 그게 좀 잘 못 되었다면 기간도 설정하고 그리고 검사가 언제까지 보완수사 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과 요구 사항과 기간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또한 저희가 절차를 밟아 나가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 속에서 사실은 검사한테나 경찰한테나 말 제대로 못 하고 자기 얘기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그걸 잘 안 들어주면 이의제기도 해서 수사관도 교체하게 하고, 저희가 그 이야기를 쭉 들어서 김한규 원내수석과…… 수석들이 모인 TF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승원 간사님과 하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면서 꼭 약자와 소수 피해자의 이야기들을 잘 넣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는 법무부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그리고 박은정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셔요.

검찰이라고 하는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데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 나가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남희 위원** 최근에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42.7%,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28.2%, ‘찬성한다’가 24.7%, ‘잘 모르겠다’가 4.4%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의견이 70%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가 완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들이라든가 또 권리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국민들이 이렇게 개혁 내용에 대해서 동의 수준이 높지 않은데 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형사사법구조 개혁에 관련된 이런 논의 사항들이 민생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정치검사들이 과거 권한을 굉장히 남용해 가지고 잘못된 행태를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99%의 사건은 일반 민생 사건들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처리한 사건들이.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정말 100명 중에 단 1명의 국민이라도 소외되거나 또는 권리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7월 13일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장애여성공감, 민변 여성위원회 등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그때 기자회견을 하신 단체들과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거기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검찰

이 수사지휘와 전건송치가 안 되면서 검찰·경찰 사건 공조가 안 된다, 사건 처리 지연이 너무나 심각하다, 1심 판결 받는 데 삼사 년씩 걸린다, 피해자들이 그것 기다리다가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남희 위원** 어떤 보완이 가능해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보완수사요구를 했을 때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일단 확증편향 또는 편견을 벗어나기 쉽지 않으니깐 경찰이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는 경우도 많고 서로 핑퐁하고 이러면서 수사 지연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이 소위 과정에서 상세하게 대안들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25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3년간 불송치·불기소된 384건 분석했더니 이의신청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가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재하고 구제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들을 하시냐 하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고 이의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깐 이의신청 자체가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해서 상처를 받아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의신청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된 걸 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살리는 그런 내용들이 개정안에 있는데 이 경우에 인지사건이라든지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사건은 오히려 암장될 수 있지만 악성 고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이 번갈아 가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진다. 그런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다만 이의신청과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가장 심각한 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고소인이든 피해자든 사회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은 대개 처음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지고 권리구제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겠지만 대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검찰이 신경 써야 될 게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약자들인데 이분들이 만약 수사 내용도, 진행 과정도 잘 모르고 결과 통지만 받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법률 전문가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비용이, 사법 비용이 굉장히 증가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같습니다.

○**김남희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드리세요.

○**김남희 위원** 국선변호인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국선변호인들이 수당도 너무 낮아서 실제로 사건을 그렇게까지 성실하게 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오는 순간 사건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의신청 자체에 대해서 국선변호인들한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게 현실입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의신청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구제 수단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문제 제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변 여성위원회에서도 얘기하시는 게 단순히 온 좋게 좋은 수사관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만으로 어떤 권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견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여성 폭력 사건에 대해서 전건송치 그리고 피해자 불송치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을 보장해야 된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피해당사자 자격 참가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한적 보완 수사 이런 내용들을 요구하셨어요.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려요?

○김남희 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위원님들이 바로 그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논의 과정,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남희 위원 잠시만요,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저희가,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될 위원님이 계셔서 김남희 위원님 하시고 의결하고 난 다음에 또 현안질의로……

○박은정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난 다음에 현안질의시간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법안 처리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의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 사실 지금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피해자들의 목소리, 여성들의 목소리, 장애인 목소리, 아동 피해자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 안 하면요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

변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위원님들 잘 논의해 주세요’ 이 정도만으로는 안 되지 않나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법안심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잘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쭙볼게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이 어렵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사건의 처리 과정과 내용을 모릅니다, 결과만 알고 있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알려고 하면 다른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잘 못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나 법률을 아는 사람들 선임하는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체크해 봤는데요, 이의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을 우선 쓰고, 그러면 검사에게 무조건 송치되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의신청서를 쓰면 무조건 되고. 그러나 검사가 불송치된 걸 봐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서를 쓰면 무조건 되지만 이의신청 의견서를 써야 되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맞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럴 때 스스로도 쓰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의신청 의견서를 쓰려고 하니까 도대체 경찰에서 뭘 어떻게 해서 불송치가 됐는지, 사실 내가 ‘저 CCTV 좀 봐 주세요’, ‘DNA 검사는 했나요’ 이것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이 돼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됐으면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수사 과정을 확인하게 해 달라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다고 다 확인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확인하지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는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두 번째, 성폭행·아동학대·노인 그리고 제가 얼마 전 12월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선임합니다. 국선변호인이 나랏돈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불송치될 때, 한 사건이 끝날 때, 종결될 때까지 라고 하더라고요. 이의신청을 쓰고 이의신청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때 사적으로 더 변호사를 산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검사까지 갔을 때까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송치의견으로 갔을 때는 검찰청까지 갔을 때 변호사가 그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종결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마저 살펴봐 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내용을 검사도 그리고 경찰도 모두 다 피해자들에게 잘 알려 줘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같이 있던 국선변호인에

제도 알려 줘야 되고 신뢰관계인에게도 잘 알려 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피해자들이 어 려웠던 것들을 좀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것 외에 많은 걸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이 법안에 담아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을 정리하고, 현안질의를 하려면 의사일정 변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것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여러 분에게 의견 개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국회법 제58조제5항, 제66조제3항 및 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생략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할 법안들에 대해 축조심사 및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특검법 대안 의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호관찰법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익법인법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 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오늘 의결한 안건의 구체적인 법문과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의결이 끝났고요. 급하신 분들은 일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의사일정을 통해서 좀 더 논의하시거나 법무부나 또는 법원에 제안하실 내용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그리고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김기표……

○**김기표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한테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못하고요.

○**위원장 서영교** 그렇긴 하네요. 핑퐁으로 갈까요?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필요하면 답변……

○**김기표 위원** 일문일답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니, 하시지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요.

○**김기표 위원** 제가 답변을 받아야 돼서.

○**김승원 위원**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 건데.

○**위원장 서영교**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 주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법조인이시라서……

○**박균택 위원** 법을 지켜야지요.

○**위원장 서영교** 박균택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그리고 김기표 위원님.

○**김기표 위원**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김승원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

○**김동아 위원** 박은정 위원님 아까부터 했었는데……

○**위원장 서영교**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한 번 돌려야 합니다. 제가 다 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하시지요.

그러면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승원 위원** 위원장님, 저는 홈플러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의사진행발언 5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서울회생법원에서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청산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홈플러스에는 약 2만여 명의 직간접 노동자, 협력업체 4600곳. 자산이 원래 7조 원이었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터전이었는데 하루 만에 청산절차로 가게 됐고 노동자들은 정말 길바닥으로 나왔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납품업체들 또 입점 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7월 13일부터는 67개 전 점포가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수원 북수원점도 결국에는 휴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 북수원점은 아마 원래 전국적으로도 매출 1위였던 그런 곳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가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어쨌건 회생절차 개시 이후 486일 만에 폐지 결정이 됐는데 정말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법원이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법무부·검찰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2025년 3월 4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새벽, 밤 0시 4분에 했는데 법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에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10시간 만에, 그것도 업무 개시 후 2시간 만에 개시 결정

을 내렸는가 도저히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홈플러스가 이런 회생절차 신청 전에 전단채라고 해서 긴급한 자금 2000억 혹은 4000억을 발행하고, 그 전단채 채권자들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하는 그런 결정인데 그것이 2시간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홈플러스가 아마 마이너스통장도 수백억, 수천억을 한두 달 내에 긴급하게 썼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고소·고발을 했고 검찰에서도 수사를 했는데 홈플러스 경영진이지요, MBK 마이클 병주 김인가요? 김병주와 김 모 회장 등 홈플러스 대표들에 대한 영장이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좌천이 되었는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렇게 홈플러스가 폐지 결정이 되었으며, MBK 실소유주는 지금 아주 그냥 한국을 제 집 드나들 듯이 드나들고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한 펀드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모아져 있는 국민연금 등이 MBK가 GP로서 참여하는 데 세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나게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와중에 MBK는 아마 1조~2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홈플러스의 원래 메인 자산이라고 하는 건물 이런 것들은 다 팔아 버리고, MBK는 수조 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법원에서 회생절차 하면서 판사로서 도장을 찍어 줬지만 판사는 거의 경영자 아닙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사건, 거의 경영자처럼 도장을 찍어 주게 되는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MBK가 신청하면서 관리인을 MBK의 경영진을 갖다가, 누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잖아요? 관리인 교체했습니까? 국회에서 이거는 관리인 교체가 되어야 제대로 된 원인 파악도 되고 대안도 마련된다고 하는데…… 김광일 씨지요? 교체가 됐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꼭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김승원 위원 김광일한테 말기니까 이렇게 개판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쓸 용어는 아니지만, 홈플러스 가족들과 함께 회생법원에 가셔도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냈고 또 법무부에 가셔도 왜 이런 걸, 사기가 뻔히 보이는데 왜 이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느냐, 왜 영장이 기각됐느냐 하소연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은 밖에서 계속 생계를 걸고 외치고 있는데 도대체 법원·검찰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달라고 그러고, 그런 데만 신경 쓰고 있고.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1분만 더 드리세요.

○김승원 위원 7월 20일까지 즉시항고 기간이지요? 처장님,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데……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남아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것 다시 불씨를 살릴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거 권리보호 조항을 두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판사 했을 때는 그거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MBK 김병주 회장, 홈플러스 날아가는 거 신경도 안 씁니다. 형사적으로 이거는 단죄를 해야 MBK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무위에 있을 때 국민연금 투자한 거 다 빼라고 했습니다. MBK 사업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이 사람들 돈 버는 데 도와 줘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관 자체가 불공정합니다. 그런 데다가 국민 혈세를 넣어 갖고 돈 벌게 만들고 검은 머리 외국인들……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요청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아주 귀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홈플러스가 있는데요 제가 처음 출마했을 때는 거기에 1시간이면 명함 4000장 돌릴 정도로 엄청 잘 됐는데요, 이번에 5월 1일 날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에 일하는 사람만 500명이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일하는 분만 300명 정도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되게 간절하고 받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전국에 1만 2000여 명이라고 하고요. MBK와 그다음에 메리츠입니까, 메리츠증권 간의 채권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 이때 정부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승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요청하셨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저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법무부장관 취임해 갖고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제가 이 사건에 관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지적을 했었습니다,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일선에 대한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제 개인 SNS에다가도 이 사건 관련해 갖고 다중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라는 촉구까지 제가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1월 달 정도쯤에 김병주 등 관련해 갖고 영장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아까 전자단기사채 관련해 갖고 사기적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영장이 기각되다 보니까 수사가 자칫 멈칫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정도에 반부패3부에서 2부로 수사부가 바뀌었는데 그건 이걸 수사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에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확실하게 새로운 관점에서 봐 갖고 범죄 혐의를 구증해라라고 하는 입장 정리를 해 갖고 바뀌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차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관련자들, 관계 신용평가사라든가 증권사 관계자들 조사를 6월 중에 했었고 7월 중에 관련 피의자들을 최종적으로 수사해 가지고 조사해서 어쨌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이 더 수사력을 집중하도록 저희들이 강하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먼저 홈플러스의 도산 사태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먼저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 회생계획이 결국 폐지된 이유는 운영자금, 약 한 200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항고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 항고 기간 동안에 이 자금이 마련된다면 재도의 고안에 의해서 다시 회생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은 개별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승원 위원** 관리인 교체 왜 안 하셨는지.

○**박지원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제가 좀 추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이어서 바로 하고자 하신단 말씀이지요? 이거 하나만 하시고요. ‘관리인 교체는 왜 안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그 부분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판에 관련된 것이라서 행정처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재판이에요. 관리인 교체 왜 안 했느냐는 경영과 관련된 건데요, 처장님.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도 법원의 결정에.....

○**김승원 위원** 저도 도장 다 찍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기업체 사장으로 역할을 하는 거지요, 판사가. 다만 공정하게 할 뿐이지요.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관리인 바꾸는 게 재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상거래 채무 350이었던 게 88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뭐 한 겁니까? 상거래 채무, 공익채권인가요, 그것만 늘어나서 채권자들의 피해는 더 양산되고, 5000억을 썼으면 뭔가 가시적인 결과를 법원에서 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거래 채무만 8000억으로 늘어나게 하고 폐지시켜 버리면 거기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데 이것은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정말.

.....
○**위원장 서영교** 서영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절차를.....

우선 법원행정처장님, 지금 김승원 간사님의 질의에 좀 귀 기울여 주시고요. 오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어느 기업을 돕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휘청이게 하는 내용이라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뒤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파악해서 끝나기 전까지 좀 말씀 주실 수 있으면 주실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내용 좀 파악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연관된 내용이라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박지원

위원님께서 저에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위원 제가 1차 질의 때 검찰에서 1년 6개월 수사하고 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경찰에서 하고 있다 하는데……

○법무부장관 정성호 쿠광 사건 말씀이십니까?

○박지원 위원 예, 쿠광 사건.

그런데 이……

○법무부장관 정성호 MBK는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위원 MBK는 검찰에서 하고 있고.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1년 3개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 1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한다 하는 사법부와 검찰이 도대체 민생에 대해서는 무슨 화성에서 일어나는 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보도에 의하면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김승원 간사가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마는 MBK가 다 뽑아 먹은 거예요. 국민은 아는데 법과 원칙을 존중한다는 검찰과 사법부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울어야 되나 이거지요.

중소기업 납품업자들이 울어야 되느냐, 노동자들이 울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구속영장 청구하면 사법부에서는 기각해 버리고, 서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67개인가 되지요? 그런 것들이 일제히 문 닫아 버리면 다 MBK하고 메리츠하고 같이 해 먹은 거예요 철저히 해서 내일이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이재명 검찰이고 이재명 사법부입니다. 사법부도 먹튀한 이런 사람들을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으면 누구를 해요? 민생을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법안은 통과되었고 그러나 또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우선 현안질의로 가는 게,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현안질의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현안질이라고 하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도장이 한 분 필요해서 지금 가지고 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위원장 질의를 하나 하는 동안…… 잠깐 그렇게 하실까요, 조금 쉬어 드릴까요?

제가 우선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 봐 주세요. 김학의로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은 5분 주시고요.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제가 초선일 때입니다. 김학의가 법무부차관으로 추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별장 성접대 영상, 주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이야기했습니다, 저보고, 이 영상 갖고 있다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차량에—BMW 차량입니까—거기에 온갖 뇌물과 청탁과 이게 다 얹여 있었어요. 거기에 김학의가 있었던 거지요. 그 영상, 이 내용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올린 겁

니다, 법무부장관님.

그런데 검찰이 무혐의 처 버립니다. 2014년에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이 2차도 무혐의 처했습니다. 검사는 제 식구 감싸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김학의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한 적이 없고요 계좌 추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고, 영상 다시 넘겨 보세요.

‘불상의 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김학의가 뻔한데, 온 세상 사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검사들이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마이크 들고 노래하고 여성과 같이하는 장면, 저기에는 안 나왔지만요 ‘여성이 남성에게 안겨 블루스를 추는 모습이 나오다’. 위 여성의 얼굴은 식별이 불가하여 그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곤란해서 불기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학의 얼굴이 다 나와 있는데? 그리고 당사자가 저 모습 아닙니까?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불기소하고 철저히 자기 감싸기를 했던 검찰들, 치욕의 역사 속에 이제 다 잊혀져 간 듯 하지만 검사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때 이것을 감싸고 은폐, 지금이랑 똑같아요. 감싸고 은폐하고 죽이고 암장하고 그리고 오히려 경찰들이 인사 발령 나고, 이 사태 이제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그 힘과 권력으로 경찰을 다 인사조치 했던 것 아닙니까?

다음, 아까 박은정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진 씨는 누구입니까, 진 씨? 후배 성추행입니까, 성폭행입니까? 이게 왜 저렇게 가리어졌고…… 후배 검사들 성추행, 성폭행 과정에 있었는데 검사가 다 무마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누구의 처남입니까? 한동훈 처남 아닙니까? 당시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진형구 검사장이었던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사위」 하는 위원 있음)

사위? 사위는 한동훈이고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 내용 누가 다…… 수사권이 있어도,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그러나 잘하는 검사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법무부장관님.

성남FC 건입니다. 성남FC 건, 장영하인가 하는 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고발했지요. 고발했는데 그것 경찰이 전부 다 수사해서 뭐 됐습니까? 무혐의 났습니다. 그렇지요? 이 성남FC 건 무혐의 났는데, 불송치했는데 검사가 그것 들고 보완수사 해서 제삼자뇌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성남시장, 그 일 잘하던 성남시장이 포토라인에 제일 먼저 선 게 바로 그 건 아닙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검찰의 대개혁 속에서 일 잘하는 검사들은 일 잘하게 그러나 이런 데 휘둘리지 않게, 검사가 했던 그 수사의 역량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일 잘하게 그리고 경찰도 이 과정 속에서 암장하거나 폭주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형사소송법의 기본 골간 아니겠습니까?

성폭력 피해자, 아동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등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소외받지 않게 우리의 권리를 넣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뒤에 와 계신 이웅철 검찰국장님 그때 계셨지요?

○법무부검찰국장 이웅철 예.

○위원장 서영교 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이의제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국선 변호사가 불송치 뜨기까지만 변호인이냐? 이때 우리가 얘기 들어서 그것을 국선변호인

이 이의제기 때까지, 송치할 때까지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일이 많다면 한 번 더 사건을 선입하는 형태로 해 준다는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아까 제가 했던 것 중에 적으시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형사소송법 절차에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 관련해서도 아까 동의하셨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어떻게 된 겁니까? 경찰은 어떻게 했던 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최초로 경찰에서 혐의없음 처분했던 사안이고요.

○**위원장 서영교** 불송치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나중에 문제돼 가지고 이렇게 결국 제삼자뇌물죄까지 이어져 가지고 기소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영교** 이게 경찰이 불송치한 건데 장영하가 고발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의신청권이 그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의신청을 했고 이게 검찰로 송치돼 들어오자 직접수사를 하면서 제삼자뇌물로 성남시장을 엮어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저희가 다음에는 현안질의가 필요하고 의결이 빠르게 필요하다면 이렇게 현안질의도 안건으로 상정해서 하실 수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기 전까지 자료가 위원님들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까지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사이에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수사 중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한테도 송치가 됐건 이의제기신청을 했건 해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증거가 있는데 증거를 제대로 확보 안 해 준다는지 그리고 기본권이 피해받는다는지 그러면 피해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의제기를 할 테니까 수사관을 교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도 가능한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제가 보기에선 시정조치를 통해서 지금도 가능하지만 가능하게 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말씀처럼요. 가능한지 아닌지도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기본권이 침해된다는지 아니면 몇 개월 내에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안 해 준다는지 이런 절차에 맞는다면 수사관 교체 요구가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피해자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불송치됐어요. 그런데 이의신청을 통해서 검사에게 갑니다. 송치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요구하거나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했던 경찰이 아니라 상급기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든지 아니면 영등포서에서 했다면 서울광역경찰청이라든지 이런

게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도 절차를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김승원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15시42분)

○위원장 서영교 김승원 위원께서 현안질의를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동의서에 김승원 위원 외 한 분 위원님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일정 변경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질의를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안질의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현안질을 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박은정 위원님, 손솔 위원님.

그러면 김기표 위원님이 한 번도 안 하셨으니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표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표 위원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님, 행정처장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합니다.

○김기표 위원 행정처장이 되시면 대법원 재판은 안 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재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관이실 때 하루 일정이 굉장히 바쁘시지요? 판결문 몇 개 정도, 결정 몇 개 정도 해야 되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40~50개 정도……

○김기표 위원 하루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일주일 단위로 해서 평균으로 치면 그 정도……

○김기표 위원 평균으로 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00건 정도 하는 모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모든 사건을 다 하면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노경필 행정처장님은 2025도4697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참여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다수의견으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김기표 위원** 그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판결에 대해서 선거 개입이든지 아니면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오해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게 없군요, 그 부분은?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잘못된 게 없으면 당연히 사과도 안 하시겠네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다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국민들이 바보인 것 같군요. 대법원은 잘못된 게 없는데 국민들은 지금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에서는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로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대법원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명령을 지켰다는 이유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물론 그렇지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나고 거의 바로 그다음 날 검찰이 상고장 제출하니깐 그다음 날 트럭으로 갖고 왔는지 사람이 갖고 왔는지는 알 수 없어도 기록 가져가고. 그렇지요, 그런 사실이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김기표 위원** 그렇게 해서 접수하고 그다음에 소송기록 접수통지도 집행관 송달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명령에 어긋난 것은 없지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표 위원** 없었지요. 파악을 할 일입니까, 그게?

그래서 명령은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른 사건에 비해서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표 위원** 오해가 아니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22일 날 전원합의체가 배당되자마자 그날 첫 심리를 진행해요. 4월 22일입니다. 그런

적이 역시 없지요? 어떻게 회부되고 바로 첫날 심리를 진행합니까? 그것도 법령은 지킨 거지요. 순서상 가능합니다. 배당하고 첫 심리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두 번째 심리기일을 잡거든요. 그것도 법령은 지켰지요. 법령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잘한 겁니까?

노경필 대법관님, 다수의견 내셨는데 기록 보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봤습니다.

○김기표 위원 기록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셨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법관으로서 재판을 하기에 충분한 정도는 봤습니다.

○김기표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이 안 되니까 제가 더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묻겠습니다. 4월 22일하고 24일 날 두 번의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이 열렸는데 그때 심리는 몇 분 정도 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두세 시간 이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김기표 위원 행정처장님도 그때 당시 의견을 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당연히 냈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금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 직접 개인적으로 이것에 관해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없습니다.

○김기표 위원 주심 대법관이 박영재 대법관이었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박영재 대법관은 언제부터 이 판결문을 쓰기 시작했나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주심 대법관님이 하신 거라서 정확히 언제부터 판결문을 작성하기 시작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표 위원 이 판결문에 보면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쓰면서 빨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정의’가 뭐니까? 지연되면 안 되는……

1분만 주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십시오.

○김기표 위원 대법원이 생각하는 여기서 지연해서는 안 되는 정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대선후보 자격이 없게 만드는 것이 정의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표 위원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반대의견에서는 숙고가 필요한데 숙고가 부족하다는 뜻이 쓰고 있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반대의견도 충분히 그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표 위원 제가 대법원이 이제는 국민들을 그렇게 기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령을 지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해라고 얘기하는데 오해가 아니지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여기 나오셨으면 그런 이례적인 판결을 하게 된 것, 사법부의 불

신을 자초하게 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서 앉아 있을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판결에 대해서 정무적 내지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희들로서는 그러한 정무적 판단에 의한 판결은 하지 않았습시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요즘 기록 뭘로 보세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종으로 보고 계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부분 보고…… 거기서 말하는 소송기록은 전자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판연구관들이 보고한 보고서를 종으로 보고 있고 필요한 소송기록은 전자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연구관이 보내온 내용으로 대법관으로 판결하셨지요? 종으로, 연구관이 가져다 준 종으로 보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리고 종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구관의 보고서도 다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연구관의 보고서가 전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산 등록된 것 열어서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필요하면 들어가서 봅니다.

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출력해서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우면 제가 바로 그냥 전산을 띄워서 보게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대법관님으로 계실 때 그러면 한 몇 페이지 정도짜리까지는 전산으로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전산으로 볼 수도 있고 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위원장 서영교** 언제부터 전산으로 보기 시작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대법관 된 이후로 바로 그랬습시다.

○**위원장 서영교** 언제 되셨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재작년 8월에 됐습시다. 2년쯤 됐습시다.

○**위원장 서영교** 원래 종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언제 법안이 실시가 됐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일단 전자소송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전자소송으로 되어 있어서 원칙이 전자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의 가독력을 높이기 위해서 출력해서 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지요. 전자시스템이……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형사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형사재판은 원칙적으로 종이 기록입니다, 현재까지는.
-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김기표 위원이 질의하신 사건이 그 사건인데 딴 얘기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는 일반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서영교 형사재판은 종지로 보십니까, 전자문서로 보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칙적으로 종지로 보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다 전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서영교 원칙적으로는 종지로 보시지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제가 대법관에게 직접 질문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종지로 본다. 그리고 나는 대법관 된 이후로 종지로 안 본 적이 없다. 다 종지로 보내온다. 어떻게 전자문서로 다 보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법관인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대법원에 가서 같이 대법원의 현장감사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종지로 본다고. 그리고 종지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중요한 내용은 다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산으로 등록된 것을 전산으로 열어 보십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연히……
- 위원장 서영교 그러면 형사재판 건을 전산으로 열어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제가 대법원에 갔을 때 형사재판 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연구관이 ‘저는 민사입니다’라고 해서 민사 얘기를 하던데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아닙니다. 형사에 대해서도 증거들은……
- 위원장 서영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질문할게요.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올라오지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 위원장 서영교 올라오기 전부터 봅니까, 안 봅니까?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올라와야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사건기록이 대법원으로 올라와야 보지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송부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서영교 송부되어야 봅니다. 사건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되어야 봅니다. 그렇지요?
-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래야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당시에 이재명 사건은 송부가 며칠날 됐는지 아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록을……

○위원장 서영교 뒤에 계신 분이 답변해 보세요. 언제 송부됐습니까?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조병구 고등법원에서 기록 송부를 바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고심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3월 28일 날 고등법원에서 보낸 것으로 되어 있고 사건으로 접수되고 등재되어야 된다면서요. 법원에 등재된 게 언제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바로 3월 28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사건 접수가 3월 28일……

○위원장 서영교 그건 접수고요. 뒤에 이야기해 보세요. 접수고, 등재된 날과 달라요. 등재되고, 4월 20일인가 등재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을 해 나가는 데 이틀 만에 표결에 부칩니다, 여러분이, 대법관들이. 이래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사건으로 등재가 돼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3월 28일 날 등재가 됐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3월 28일 날 등재가 됩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접수되면 바로 등재가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게 민사입니까, 형사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지금 형사 말씀 하시고 계시는……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요. 형사면 그것을 전자문서로 봅니까, 아니면 종이로 봅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종이를 아직 못 볼 수 있지만 전자문서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종이로 오는데 그 20만 페이지는…… 20만 페이지인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는 7만 페이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7만 페이지, 7만 페이지면 100페이지짜리 책 몇 권입니까? 700권이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그 내용은 접수 온 날 어떻게 여러분이 봅니까, 내 사건도 많은데? 올라와야 보는 거지요. 접수해서 달려오는 데도 오래 걸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파기환송 했는데 그것이 역사적인 과오로 계속 남아 있는데 안에서 양심선언하는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박은정 위원님 현안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정 위원 법무부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 그 사건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은폐되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대검은 ‘부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갔다’, 당시에 남부지검은 ‘소문이 와전되었다’, 남부지검의 문찬석 2차장검사는 ‘그냥 본인이 좀 힘들어서 쉬고 싶어서 사직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 내에서 중대한 성폭력 비위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입니다, 장관님. 그래서 검찰이 지금 성폭력 사건 수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그걸 되묻는 것입니다.

검찰에서 사건이 은폐된 사건이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

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학의 성폭력 사건은 보완수사로 검찰이 은폐했습니다. 그 사건 봐주기 수사한 검사,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 검사의 후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봐주기,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친윤 검사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수차례 압수 수색영장을 신청하고 구속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그때마다 번번이 영장을 기각하고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가 공항에 잡혀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그것마저도 반려하고 마침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윤우진 사건의 봐주기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의 경찰관들의 유착과 관련된 은폐와 은폐의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은 지금 경찰 자체적으로 팀장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검경이 수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은폐, 검사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검사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은폐하는 이 검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수사권 남용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서는 수사개시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는 없다, 보완수사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검찰 내에서 수사개시 한 사건, 인지수사 한 사건은 5100건 정도 됩니다.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5000건의 수사개시권을 폐지하더라도 139만 5000건의 보완수사권, 2차 수사권을 가진다면 그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에서 수사하는 것이 별건수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형사소송법 198조에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최근에도 별건수사로 무죄가 난 것이 민주당 돈봉투 사건입니다. 그것은 수사받을 당시에는 별건이라고 수사의 방법을 다룰 방법도 없고 몇 년 후에 구속되어서 후에 무죄가 나더라도 그것은 늦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로 표적수사를 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성남FC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별건수사도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표적수사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가장 먼저 포토라인에, 성남지청 앞에 선 사건입니다, 장관님.

보완수사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가 불가능하니, 이제 수사개시권을 폐지했으니 수사권 남용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는 형사사건 140만 건 중에 수사개시 건 5000건만 폐지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하신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의 전면적 폐지와 공소청의 검사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개혁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경찰 수사의 문제점, 검찰의 기소권의 문제점들을 공수처나 중수청 등의 제3의 기관에서 그 비위를 잡아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렇게 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설계 방향입니다.

법무부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보완수사권에 연연하는 이런 태도로 법무

부장관님도 그렇고 차관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제반 작업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협조해서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하시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과거 김학의 사건을 비롯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건들은 검사가 연루된 참 부끄러운 사건들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도 그 당시에 정치를 했었고 그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해 가지고 결국은 무마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피해자들이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런 하소연들이 전달되지도 못하고 은폐됐던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강했던 거고요.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약간 미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 일부 특수수사권을 남겨 두는 바람에, 일부 남겨 두는 바람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수수사권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전면적인 수사권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유증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적하신 사건들에 드러났던 겁니다.

그런 반성 위에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설립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정치권력과 결탁했던 일부 검사들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위원님들은, 위원님께서 1%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보완수사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단 한 번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완수사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1%의 피해자가 없게 하는 게 검찰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과거 정치검찰들, 일부 일탈된 검사들의 권한남용 문제는 분명히 이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설립됐는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제에 정말 검찰의 비위와 관련해서 보다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게 공수처의 권한이라든가 역할들 또 법적 미비점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논의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관련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검찰은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사건은 99% 형사사건입니다. 지금도 이미 어차피 말씀하신 몇천 건의 인지사건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경찰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경찰이 능력이 없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처리하고 일차적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들을 어느 정도 한번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게 위원님들이 좀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두 분 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보완수사를 통해서 불기소·불송치되었던 것을 제대로 범죄자를 잡아 나가는 과정, 그 과정에 관한 것을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안에 절차를 잘 넣어서, 보완수사가 있어서 꼭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절차를 잘 넣고 누구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그리고 수사를 철저히 해 주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피해자분들과 그 관계자분들이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내용을 철저히 잘 들어서 잘 보완해 나가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보완수사’, ‘보완수사 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큰 검찰개혁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발걸음이 뭐라 그럴까요 엉키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그 내용을 잘 보완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또한 기회입니다. 더 경찰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하고 그렇게 갈 수 있게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위원님 하시고 손솔 위원님 하시고 그리고 김남희 위원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지원 위원 제가 오늘 너무 발언을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약 2시간 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떠서더니 확실히 적응력이 좋네요.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합니다.

○박지원 위원 내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알겠지요? 답변 잘하시라 이거예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는 물론 부부일신이고 정치공동체고 경제공동체라고 봅니다.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유죄판결을 받았잖아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박지원 위원 그러니까 특검에서 대법원에 김건희 선고를 한 달간 연기해 달라 했는데 그것은 곤란하고 8일간 연기해 준 것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기해 준 것은 윤석열이 비록 1심이지만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면 김건희의 1심·2심 판결, 무죄는 잘못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서……

○박지원 위원 정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네요. 모든 것은 재판부에서 결정한다 하는데 우리 정치인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법부도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국민이 없는 사법부가 왜 필요해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맞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정확한 판결을 하는 것이 과거에 잘못 파기환

송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명태균 씨하고 같은 관계예요. 그 선고도 하급심에서, 1심에서 잘하셔야 된다. 잘못하면 법원행정처장님이 여기에 와서 혼나요.

지금 우리가 대법원에서 이재명 파기환송 한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로그인한 시간도 다 있어요. 그것 잘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김학의 사진·동영상·녹음테이프를 당시 법사위, 서영교 위원 초선 때 제가 입수해서 법사위에서 분담해 가지고 터뜨렸어요, 박영선 위원하고. 그런데 그렇게 명명백백한 사진과 동영상과 녹음테이프가 있는데도 검찰이 조작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오늘의 검찰의 업보입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보완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턱도 없다,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박은정 위원하고 늘 생각이 같았는데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완수사를 허용하자, 일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검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한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숙의해 봐라, 그리고 담당 장관인 법무부장관도 여기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왕도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민변이나 여협, 여성단체 그리고 국민 다수가 아동·성범죄·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번에 장윤기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을 하자 그러한 여론이 많다는 것……

그래서 제가 법사위에서 그때도 말씀했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숙의하라 염려를 하시고 법무부장관도 그런다면 우리가 형소법을 촛촛히 챙기자 또 법무부에서도 시행령을 촛촛히 하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검찰은 나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아니, 김학의 사진을, 동영상을……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릴까요?

○**박지원 위원** 테이프를 내가 다 가지고 와서 봤다니까요.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시지요.

.....
○**박지원 위원** 그런데도 검찰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찰만 나쁜 게 아니니까 선입견 갖지 말고 정확하게 한번 토론해 봅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도 그 당시에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92년도에 변호사 개업해 가지고 지금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으로서 일관되게 검찰개혁 주장해 왔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면서 권한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제 식구 감싸고 정적에 대해서 표적수사를 해 온 것에 대해서 늘 비판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한 검찰의 권한남용의 최대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관련된 사건들을 최초부터 다 저도 늘 의논해 왔습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도 정말 검찰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된다, 몇몇 검사들이 인사조치 해서 나가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조직 문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그야말로 존폐의 기로에 설 거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검찰 제도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보다 촘촘히 면밀하게, 정말 세밀하게 입법을 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지원 위원** 그러한 수사를 경찰이 잘못했지만 검찰이, 그러한 나쁜 짓 한 검찰이 경찰을 일방적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그리고 저는 염려를 하는 게 지금 개혁신당 부산시장후보자의 자해행위도 현재 이미 다 나왔는데 꼬불쳐 놓고 있잖아요. 광주 문제가 해결되면 부산 것 들고 나올 거예요. 이러지 마라 이거지. 아시겠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뭐 그렇습니다.

○**박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법무부장관님, 어려운 약자와 이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요? 여성단체분들도 그렇고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요, 이 과정 속에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 곽아람 기사를 저희 법무부로 모셔 가지고 했는데 그게 보완수사랑 관련 없이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수사 상황이라든가 재판 사항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결국 수사에 있어서 정작 피해자가 완전히 소외되는.....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법무부 내부에서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부터 최종 재판 과정까지 어떻게 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피해자가 더 촘촘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게 요청하는 사항이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보완수사 해 주세요’가 아니라 피해자와 약자들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또 2차 피해 받지 않게 해 주시고 말도 잘못 하지만 증거를 제때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처럼 재판정에 나갔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답변하는데 다 거짓말인데 나는 그 재판정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요청할 때 나도 좀 세워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것 반박도 하게 해 주세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리고 법원 단계, 여기에서 그 부분들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잘 촛촛하게 넣으면 될 거다 싶고요.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할 것은 수사해서 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들은 나쁜 조직이 되어서 은폐하게 된 거지요. 그 은폐하게 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그래서 그들은 다 지금 수사 대상이고 그리고 직위도 해제시키고 이렇게 돼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검사도 나쁜 짓 했으면 다 직위해제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다 그대로 있지요? 다 어디 가서 승진하고 땡땡거리고 있지요. 저는 이렇게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처럼 약자들의 이야기를 잘 넣어서 살펴볼 수 있게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과거 검찰이 수사의 주체자로서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생겼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는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증거의 취사선택부터 모든 결정을 경찰이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 운영될 거라고 하는 선의에 입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운영, 잘못되게 악의를 갖고 운영될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는 제도 설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맞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고 위원님들께서 촛촛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영교** 맞습니다.

CCTV를 압수수색했다, 그 순간 경찰의 기록을 통째로 검찰하고 공유합니다. 지금도 압수수색과 구속영장과 동시에 모든 기록이 통째로 서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누구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그런 장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술 위원님.

○**손술 위원** 장관님, 제가 드린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오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건송치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토론 과정에서 보완수사권도 있어야 하고 전건송치도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아니신 거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희들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관련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술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이미 없는 상태에서 검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이전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건송치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좀 고민해 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맞으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도 있지만 수사개시권이 이제는 경찰에만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개시된 사건에 관해서 종결권마저도…… 종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송치할 것인지 불송치할 것인지, 이것은 사실 그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다음의 일종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종결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으로써 경찰의 권한 남용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하에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손술 위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에 제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알겠다. 그런데 나열적으로 하면 토론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뭐가 가장 중요하나?’ 이렇게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순위로 전건송치 이야기를 피해자 지원 단체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린 자료 44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민변 여성위에서도 의견을 냈고 대한변협에서도 이런 전건송치 복원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이 전건송치라는 단어가 주는 상징성과 규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가 이게 좀 고민이 있고. 하지만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겠어요. ‘한번 리뷰를 받아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상호 점검이 돼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불안이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능적으로 분산하면서 형사소송법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는 44페이지에 제출을 했고.

17페이지 봐 주시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의 검사는 법률 리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걸 오히려 의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권력적 ‘기소 전 사실 확인’ 이것을 좀 명확화한다면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찰에서만 다 해 버리면 누가 리뷰를 해 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리뷰를 못 받고 소외되는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면담 신청제도 이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 전건송치를 바꿨던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술 위원** 그리고 장관님께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도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요, 교제폭력 관련해서 입법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어쨌든 교제폭력 또는 관계성 범죄의 정의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법원행정처와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좁혀 갖고서, 어쨌든 지금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입법화가 신속히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국회에 의원님들 법안이 몇 개 나와 있습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교제관계의 폭력과 스토킹의 개념이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제폭력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을 스토킹처벌법에 한정해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 정성호** 동의합니다.

○**손솔 위원** 스토킹처벌법에 개정안을 넣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가정폭력처벌법, 교제폭력,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제정안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접근이 돼야 되는데 스토킹은 관계성이 교제랑 좀 달라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손솔 위원** 그래서 잠정조치가 스토킹처벌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 규율할 수 없는, 개념적 접근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다행이고, 저는 뭔가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 스토킹처벌법으로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같은 생각입니다.

○**손솔 위원** 종합적으로 꼭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위원장 서영교**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소청은 10월 2일에 출범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하던 수사, 중대사안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그 역할을 맡아서 전문적인 수사기관으로서 훨씬 더 빠르게 수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수본이 민생과 관련한 등등의 수사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새로 출범하는 두 기구에 맞춘 절차법이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김남희 위원** 제가 피해자들에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걱정을 하는 게 경찰에게 수사를 전부 맡길 경우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지역 유착,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찰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지역의 유력인이나 유지들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권력자와 관련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성폭력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쪽의 입장이 갈리고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경찰에게만 수사를 전부 맡기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하기 어려운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회적 약자의 경우나 사건 초기에 증거 확보나 양쪽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성폭력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우려들, 지역의 유착 문제나 은폐의 문제나 암장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거냐 그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기소에 충실하라고 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도 우려하시는 것은 기록으로 나와 있는 자료만 보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했는 데 이게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서류를 보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요청을 해서 또 받을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해결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유착이나 뭔가 은폐를 하고자 하거나 암장을 하고자 하거나 최근에 발생한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구제가 될 것인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지금 나와 있는 대안만으로 충분한가, 그러니까 이런 암장 문제나 은폐 문제나 지역의 유착 문제 그리고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해법을 우리가 내놓을 수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사실 저희 법무부에서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수사한 사건들,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말 최소화한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들에 관해서만이라도 검찰의 전건송치를 의무화하는 게, 그래 가지고 검찰이 다시 한번 리뷰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건송치를 얘기했던 겁니다.

○김남희 위원 사실 전건송치에 대해서 피해자 단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될 경우에 부작용이 뭐가 있을까요? 전건송치가 추진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좀 궁금해서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저는 전건송치 했다고 해서 피해자나 사건…… 물론 전건송치 하게 됐을 때 조기에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던 사건들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지연되니까 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되는 피의자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아무 혐의가 없다고 하면 좀 더 불안정한 상태가 오래되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전건송치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이 전건송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남희 위원 제가 요즘에 듣고 있는 얘기들 중의 하나는 경찰들이 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경찰 전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고액의 수입료를 얻고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한 현장에서의 우려들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송치해서 최종적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권한도 크지만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종결시키는 권한도 저는 그 이상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록을 넘겨 가지고 다시 본다고 하지만 송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검찰이 보는 것하고 일부 기록만 넘겨 가지고서 검찰이 대충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큼니다.

○김남희 위원 그래서 또 나오는 얘기 중의 하나는 보완수사권 아예 폐지하는 대신에 경찰이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초기 단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도 해결을 하기에 더 적절한 방식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맞습니다. 사실은 초기 입건 단계부터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 행정기관들 사이에서 칸막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더군다나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제도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부작용이 더 큰데 실질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수사하는 경찰과 또 법리적인 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검찰과 잘 협력관계를 맺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수사기관들 사이의 오랜 역사와 전통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지 않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김남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과 경찰이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더 추가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중수청과 관련해서 중대한 범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소유지도 굉장히 어려운데 최종적으로 중수청이 수사해 가지고 일정 사건 같은 경우는 불송치하고 송치해야 한다. 그 송치했을 때 검찰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사건의 입건 통보부터 해 가지고 검찰과, 공소청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제도가……

○**법무부장관 정성호** 없습니다.

○**김남희 위원** 법안에 없잖아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남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중요한 사건 간에 지금 긴밀히 협조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지금 중요사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동수사본부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요.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합동수사본부를 하든……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지금 합동수사본부의 근거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많은 사건 오는 것 역할 나눈 것 아닙니까,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기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역할을 나눈 겁니다, 한쪽은 수사하고 한쪽은 기소하고. 그러나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 중대하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모든 사건을

될 다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까? 그러나 중대한 사건 그리고 이번 사건처럼 경찰이 연루된 것을 할 때는 그 경찰이 수사 못 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양쪽이 잘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말씀처럼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들어 보니까 3개월 정도 남기면 빨간불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서로가. 빨간불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은 양쪽이 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을……

KICS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로 완료가 되었나요, KICS 체계는? 그전에는 서류를 들고 왔다 갔다 했겠지만 KICS 체계라고 하는 게 뭐지요? KICS 체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 보니까 한 1년 전에 거의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KICS 체계는 전자문서로 주고 받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것은 빨간불이 울리고 그러면 같이 협조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장치를 더 만들고요.

그다음에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현장에 와서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것 경찰들도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형태들,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사건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체계를 만드셔서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안을 만들어 주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런데 위원장님, 공소시효 관련해서는요 대개 공소시효가 만료, 피의자가 도망 다니거나 체포를 못 해 가지고 신병 처리가 안 돼서 사실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한두 달 전에 체포되거나 이때부터 수사 시작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서영교** 예, 알겠습니다.

이성윤 위원님, 김승원 위원님 하시고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전주을 출신 이성윤입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감사합니다.

○**이성윤 위원** 그런데 여기 오시기 전에 전임 처장님께 많은 조언을 구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조언을 해 주시던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성실히 답변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성윤 위원** 성실히 답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임 처장님들이 오셔서, 전에 박영재 처장님 같은 경우는 이재명 공선법 위반 사건의 주심이셨고 또 대법관들은 그 재판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대법관님도 법원행정처장으로 오셨지만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저분은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입장을 묻는 겁니다.

오늘 말씀한 것 보니까 전임 처장님들과 입장이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 ‘사과할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

○**이성윤 위원**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했지만 그래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

왔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재판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성윤 위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 나오셨지만 그 전에 이 재판에 관여를 하셨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데, 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양심이잖아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그 양심이라는 게 국민의 눈높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 인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 부분도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 오시면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입장을 요구하면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셨으면 입장을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저희 입장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그런 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성윤 위원** 처장님도 양심, 국민 눈높이에 따라, 상식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이성윤 위원** 최근에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이 1·2심에서 김건희에 대해서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무죄, —지금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최근에 윤석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에 대한 판결이 상식적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7월 16일에 있을, 연기를 했지만 16일 날 있을 김건희·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 이 부분도 1심 판결과 같은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한 달 연기를 요청했는데 일주일 연기를 해 줬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특검이 생중계도 요구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수용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그것은 담당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생방송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니까 가능한 한 생중계도 허용해서 법원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리고 상식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판한다는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고개를 끄덕임)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7대 사건을 골라서 수사 중에 있지요? 수사입니까, 감찰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조사입니다.

○**이성윤 위원** 조사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조사하다가 어떤 범죄 혐의가 나온다면 검사들이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수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일종의 행정조사인데 또는 검찰인데 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이겁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성윤 위원** 그러면 기록 송부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검찰사무 전반에 관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성윤 위원**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가져가면 그 기록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리 위반으로 해서 징계까지 한 사건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래서 검찰에 대검에서 판단해 가지고 그런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 사건이 7대 사건에 선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보면 최근에 검찰총장.....

1분만 더 주십시오.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주십시오.

○**이성윤 위원** 심우정 총장과 전무관 기조부장이 영장 청구가 됐는데 내란 관여 혐의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기간이 연장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가 너무 미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를 황제조사 또는 알현하고 조사를 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이런 조사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디올백이라든가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정권을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수사를 할 수 있을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조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미래위원회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윤 위원** 제가 검찰에 있었을 때 제 선배들로부터 요즘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지 마라’ 이런 압력성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직에 있는 후배들은 제가 선배니까 전화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형국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수사를 계속해 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잘못했다’ 하고 또 언론에 알립니다. 오늘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알렸더라고요. 언론에 알리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국민들은 경찰 수사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해야 되구나 이런 인상을 갖게 만듭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개혁을 막아 왔습니다. 이런 유사한 모습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대통령도, 장관님도, 우리 민주당의 유력 대표 후보자들도 모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

로 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은 폐지하지 않으면 검찰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장관님, 꼭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걸 지켜 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위원님께서도 검찰에 계실 때 굉장히 유능한 검사였고 또 일선 정도 지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저는 어떤 제도든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제도를 설계할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생길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정말, 현재 보완수사 때문에 생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의 권한남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전체 검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권과 결탁된 소위 정치검찰들의 일탈이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검찰 제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이 큼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검찰 제도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좀 더 촘촘하게, 지금 나오는 여러 법안들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지만은 더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잘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윤 위원** 국민들께서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 뒀을 경우에 또 다른 윤석열 사단이 부활되고 또다른 윤석열이 나올까 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저는 그런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현안질의하시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승원 위원** 장관님, 저도 검찰시보 그다음에 군검찰 생활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수사·기소권이 다 집중되고 군검사야말로 통제받는 데가 거의 없었으니까 사실은 제가 권한을 스스로도 남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원을 오게 됐는데요. 어쨌건 권한이 있으면 그 당사자가 또는 기관이 남용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장관님 말씀대로 촘촘하게 구성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할 때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라든가 또 간접 사실이라든가 양형까지 다 전자화시켜서 이것을 경찰이든 혹은 검찰이든 어디 서버에 보관을 시켜 두면 양 기관이 연결시키도록, 예컨대 보안등급과 아이디를 넣어서 볼 수 있게 하면 서로 견제도 하고 그다음에 왜곡되는 수사는 못 할 것이다. 또 오히려 영장 청구할 때는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되니까 영장 청구의 대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서로 잘 협력을 해서 유기적인, 협력적인 수사가 잘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노력을 할 거고요.

법원에서는 전자화시키는 데 민사·형사·가사신청 다 합해서 기반 만드는 데 한 1000억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 건에 한한 거니까 그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전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차규근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범죄 유형에 따른 수사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꼭 그것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면 수사를 빠뜨리거나 부실 수사를 하거나 혹은 지연 수사까지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대한민국은 형사 과잉 시대입니다, 사법 과잉 시대. 모든 것은 문제가 있으면 다 고소·고발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예컨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고소·고발하는 이유가 범조인들이 볼 때는 증거를 찾아내려고, 확보하려고, 그래서 민사소송이라든가 예컨대 특허소송에도 자료로 써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결론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그것 동의하시지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래서 소송할 때 디스커버리 제도를 좀 도입해서 일단은 법원의 어떤 판단하에 혹은 법원의 관리하에 서로 오픈을 하게 되면 형사 고소 남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동의하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동의합니다.

○**김승원 위원** 그다음에 사기라든가 이것도 저도 판사를 했지만 사실 100% 나쁜 놈 없고 또 100% 착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일정의 거짓말도 있고 또 피해자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욕심을 갖고 그 거짓말에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은 일도양단적으로 ‘사기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미필적고의라는 것을 써 가지고 그것을 판사의 재량에 맡겨 버리니까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또 대법원 갔더니 파기돼 가지고 유죄로 내려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배임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를 했더니 예전에는 회사의 관계에서만 배임죄 판단을 하게 됐는데 이제는 주주, 그것도 이게 대주주인지 소수주주인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상법상 보면. 배임죄가 기업 CEO들, 경영자들한테도 굉장히 찼찼하고 항상 걸림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임죄도 상법 개정과 함께 추세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떠십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요.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저희 법무부도 상당 정도 어떤 준비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또 정부 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또 국회와도 의논을 해 가지고 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원 위원** 그리고 배임죄의 주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했던 판단도 무슨 정치적 이득을 얻고 뒤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건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그렇습니다.

○**김승원 위원** 공공의 영역에서는 그것을 경제적인 플러스마이너스로만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공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기업을 유치하고 거기서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좋은 목적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김승원 위원** 1분만 시간을 더 주시면……

○**위원장 서영교** 예, 1분 더 드리십시오.

○**김승원 위원**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AI 대전환 시대가 오는데 왜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아직도 보완수사권을 어디다 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적인 논쟁이 너무나도 심하게 벌어져 있는데,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교통사고 신호위반 가지고도 재판을 엄청나게 오래 했습니다, 빨간불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그런데 블랙박스 하나 딱 설치하니깐 그게 있으니까 그런 사건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블랙박스 보고 누가 신호위반 했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AI라든가 이런 것 좀 이용할 수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바디캠, 검찰들이 와서 압수수색 할 때 바디캠을 하는데 이것을 바깥쪽으로 합니다. 저는 쌍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할 때 인권침해 사례 많습니다. 바깥쪽으로만 찍으니까 거기서 저항하는 사람들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하는 수사관들도 불법도 있고 압수수색영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가져가려고 그러고 밀봉시켜 놓고 그렇습니다. 쌍방향으로 해서 똑같이……

나는 이것 사후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등등을 장관께서 종합적으로 다 하셔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막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머릿속에 형소법 조문, 옛날 조서 그걸 위주로 해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함께 의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1분 더 드리세요.

○**법무부장관 정성호** 하여튼 저희 법무부도 그런 면에 관련해 가지고 혁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서 AI를 도입해 가지고 혁신하려고 각 실·국·본부별로 경쟁하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원 위원** 저는 검찰이라면—경찰도 마찬가지고—보안을 요하는, 예컨대 삼성전자의 직원들처럼 보안이 잘되는 곳에 자기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거기다 모든 수사 과정을 남기고 그것이 다 기록화되고 저장되고 나중에 관계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불만을 터뜨렸을 때 그것을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이 와서 검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준을 세워 나가고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예, 맞습니다.

○**김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교**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좀 더 AI와 이런 것들 또 새로운 제도와 기술을 다 넣어서 어디도 하자 없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도 경찰이 사실은 영상을 찍어서 송치하는데 다 넣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케이블 타이가 나중에 없어지기는 했는데 영상에는 남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다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법원행정처장님, 한말씀만 더 여쭙볼게요.

사건이 배당되기 전에 보십니까? 대법관 하시면서 사건이 주심 대법관에게 배당되기 전에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영교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지 않지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 예.

○위원장 서영교 이재명 사건은 4월 22일 날 박영재 대법관에게 배당된 겁니다. 그런데 4월 24일 날, 4월 22일 날 배당됐는데 4월 22일 날 전원합의체를 하고요 4월 24일 날 표결을 합니다. 거기서 끝낸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되기 전에 대법관이 보지 않습니다, 일도 많아서. 특히나 이재명 사건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났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촛촛하게 무죄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죄를 촛촛하게 정리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반박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게 3월 28일 날 기록이 왔지만 이게 상고지요, 법원이 상고하고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를 낸 게 4월 21일이거든요. 그런데 4월 22일 날 배당되고 말씀처럼 그 전에 안 봐요. 그런데 이틀 후에 표결해서 끝냅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 말하는 거지요.

오늘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월 22일 날 이재명 사건은 박영재에게 배당되었는데 4월 24일 날 표결합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다 물어봐요, 배당되기 전에 보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배당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상고도 하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리고 이재명 측에서 답변서도 오지 않았는데 봅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정치적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관장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및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기표 김남희 김동아 김승원 김용민 김한규 박균택 박은정 박지원 서영교
손솔 이성윤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전문위원 최기도

전문위원 이세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검찰국장 이응철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처장 노경필

기획조정실장 조병구

【보고사항】

○의안 회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7.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1)

7월 8일 회부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29)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26. 7. 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1)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8.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4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5)

이상 8건 7월 9일 회부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0)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6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9.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0)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 7. 9.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73)

이상 6건 7월 10일 회부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8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0.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07)

이상 4건 7월 13일 회부됨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용혜인 의원·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0)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7. 13.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9923)

이상 3건 7월 14일 회부됨

○보고서 제출

2026년도 2분기 행정기관 위원회 운영현황 보고

(2026. 7. 8. 법무부장관 제출)

2026년도 상반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 보고

(2026. 7. 10. 경찰청장 제출)

2026년도 2분기 이용·전용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제출

(2026. 7. 13. 법무부장관 제출)